부정경쟁방지법

국 가 일본

원 법 률 명 不正競争防止法

제 정 1990.05.19 法律 第47号

개 정 2018.05.30 法律 第33号

수 록 자 료 부정경쟁방지법, pp.1-76

발 행사항 세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평성2<1990>년 법률 제47호

광 포 일: 1990년 5월 19일
개 정 일: 2018년 5월 30일

원문	번역문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事業者間の公正 な競争及びこれに関する国際 約束の的確な実施を確保する ため、不正競争の防止及び不 正競争に係る損害賠償に関す る措置等を講じ、もって国民 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 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不正競 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 いう。 一 他人の商品等表示(人の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다 음과 같다.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사

람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





三 他人の商品の形態(当該商品の機能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形態を除く。)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

상호, 상표, 표장, 상품의용기나 포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 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품 등 표시를 사용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 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 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 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 서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 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 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형태를 제 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





し、又は輸入する行為 四 窃取、詐欺、強迫その他 の不正の手段により営業秘 密を取得する行為(以下

「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により取得により取得により取得により取得により取得を使用し、若を使用し、若を使用し、秘密を使用し、秘密を持定の者に対してある。次号のようなので、第二十一条及び附別によいて同じの。)

五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 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 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 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 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 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 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 行為

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 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 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 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 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 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 は開示する行為

七 営業秘密を保有する事業

하는 행위

4. 절도·사기·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영 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하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라 한다) 또는 영업비 밀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 면서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호부터 제19조제1항제6호, 제21조 및 부칙 제4조제1호에서 같 다)

5.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하 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

6.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영업 비밀을 보유한 사





者(以下「営業秘密保有 者」という。)からその営 業秘密を示された場合にお 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 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 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 、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 又は開示する行為

八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 業秘密不正開示行為(前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 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営 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又は 秘密を守る法律上の義務に 違反してその営業秘密を開 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 じ。) であること若しくは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 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 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 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 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 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 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 為

九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 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 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若 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 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 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 업자(이하 "영업비밀 보유 자"라 한다)가 그 영업 비 밀을 공개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 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하는 행위

8.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제7 호의 경우에 동호에 따른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공개 하는 행위 또는 비밀을 준 수할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 하여 그 영업 비밀을 공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그 영업 비밀에 대 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 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하 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

9.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 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나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





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十 第四号から前号までに掲 げる行為(技術上の秘密 (営業秘密のうち、技術上 の情報であるものをいう。 以下同じ。)を使用する行 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 いて「不正使用行為」とい 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 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 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 、輸出し、輸入し、又は電 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 る行為(当該物を譲り受け 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 当該物が不正使用行為によ 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を知 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 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 に限る。) が当該物を譲渡 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 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 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 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 行為を除く。)

十一 窃取、詐欺、強迫その 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限定 提供データを取得する行為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 거나 또는 공개하는 행위

10.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기술상 비밀(영업 비 밀 중 기술상의 정보인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 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이 하 이 호에서 "부정사용행 위"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 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 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물건을 양도받은 자(양도받 은 때에 해당 물건이 부정 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1. 절취(窃取), 사기, 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以下「限定提供データ不 正取得行為」という。)又 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 行為により取得した限定提 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 は開示する行為

十二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 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 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 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 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 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 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三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 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 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 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 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 を開示する行為

十四 限定提供データを保有

する事業者(以下「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いう。というその限定提供デースの限定提供デーて、タ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がある。 、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の保定提供データの管理に係る任務。 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の管理に係る任務。 はその管理に係る任務。 はその管理に係る任務。 はその管理に係る任務。

に違反して行うものに限る

행위(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 는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 득행위로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2.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한정제공데이터를 시작성을 알면서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기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4. 한정제공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라 한다)가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제시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행위(그 한정제공데이터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반하여이행하는 것으로 한정





。)又は開示する行為 十五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 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 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 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 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 タ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 以下同じ。) であること若 しく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 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 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 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 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 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 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 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 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 があったこと又はその限定 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 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 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 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 示する行為

十七 営業上用いられている 技術的制限手段(他人が特 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 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 の実行若しくは情報(電磁 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 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 한다) 또는 공개하는 행위 15.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제14호의 경우에 동호에 따른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같다)나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6.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7. 영업상 이용되는 기술 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 (音)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 행이나 정보{전자적 기록 (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 적(磁気的) 방식, 그 밖의





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 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 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 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 のをいう。) に記録された 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 次号及び第八項において同 じ。)の処理又は影像、音 、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 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用 いているものを除く。)に 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 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 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 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 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 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 視聴等」という。)を当該 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 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 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 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 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って 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 きるものを含む。)、当該 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 (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 ログラムと組み合わされた ものを含む。) 若しくは指 令符号(電子計算機に対す る指令であって、当該指令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기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 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 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 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하 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 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 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 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 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 (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 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이나 명령 부호(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해당 명령 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





のみによって一の結果を得 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いう 。次号において同じ。)を 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 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 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 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 、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 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 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 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 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 プログラムが当該機能以外 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 にあっては、影像の視聴等 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 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 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 行うものに限る。) 又は影 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 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 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 供する行為

十八 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 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 、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 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 、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 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営 業上用いている技術的制限 手段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

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 록 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 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 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 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 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 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 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 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8. 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 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 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 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 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상 이용하는 기술적 제한수단 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영상





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 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 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 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 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 「影像の視聴等」という 。)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 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 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 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 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 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 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 。)、当該機能を有するプ 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 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 わされたものを含む。) 若 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 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 機器を当該特定の者以外の 者に譲渡し、引き渡し、譲 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 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 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 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 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 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 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 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 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 、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

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 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 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 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 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서 용이하게 조 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 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 함한다), 명령 부호를 기록 한 기록 매체나 저장한 기 기를 해당 특정인 외의 사 람에게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 는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 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 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 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 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 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 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 限る。) 又は影像の視聴等 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 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 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十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 で、又は他人に損害を加え る目的で、他人の特定商品 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 名、商号、商標、標章その 他の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 るものをいう。)と同一若 しくは類似のドメイン名を 使用する権利を取得し、若 しくは保有し、又はそのド メイン名を使用する行為

二十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ない。 これの高書類若しくは通知に足いる書類若しない。 これの商品の原法、はるとののので、製造者とはいるをしている。 は数量をしている。 は数量にはいる。 これのの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のでは、はいるの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な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な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ないるでは、はいるでは、は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はいは、は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ではないる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 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 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 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계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또는 보유하거 나 또는 그 도메인명을 사 용하는 행위 20. 상품, 서비스 또는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 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 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 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 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 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





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 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 若しくはその表示をして役 務を提供する行為

二十一 競争関係にある他人 の営業上の信用を害する虚 偽の事実を告知し、又は流 布する行為

二十二 パリ条約(商標法 (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 十七号) 第四条第一項第二 号に規定するパリ条約をい う。)の同盟国、世界貿易 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 約の締約国において商標に 関する権利(商標権に相当 する権利に限る。以下この 号において単に「権利」と いう。)を有する者の代理 人若しくは代表者又はその 行為の日前一年以内に代理 人若しくは代表者であった 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 に、その権利を有する者の 承諾を得ないでその権利に 係る商標と同一若しくは類 似の商標をその権利に係る 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 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 役務に使用し、又は当該商 標を使用したその権利に係

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1.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의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 포하는 행위 22. 파리 조약[「상표법」 (소화34<1959>년 법률 제 127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리 조약을 말한다] 의 가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 리(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 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권리"라 한다)를 가지는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 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 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 리와 관련된 상품과 동일하





- 2 この法律において「商標」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商標をいう。
- 3 この法律において「標章」 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 規定する標章をいう。
- 4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の 形態」とは、需要者が通常の 用法に従った使用に際して知 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 きる商品の外部及び内部の形 状並びにその形状に結合した 模様、色彩、光沢及び質感を いう。
- 5 この法律において「模倣する」とは、他人の商品の形態に依拠して、これと実質的に同一の形態の商品を作り出すことをいう。
- 6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

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인 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 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 ② 이 법에서 "상표"란 「상 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표장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상품의 형태" 란 수요자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때에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 및 내부의 형상, 그 형상에 결합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모방하다"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 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영업 비밀"이 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





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 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 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 て、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 のをいう。

7 この法律において「限定提供データ」とは、業として特定の者に提供する情報として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人の知覚にきない方法をいう。次項においては認識することがおおいるとがおいる。)により相当量蓄積によりにより相当量蓄積に入び管理されているものを除し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を除し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をいう。

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 업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한정제공데이 터"란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 법[전자적(電子的) 방법, 자 기적(磁気的)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제8항에 서 같다]으로 상당량 축적되 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 업상의 정보(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기술적 제한수 단"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영 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 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 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 의 정보의 기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시청 등 기기(영 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 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 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 의 정보의 기록을 위하여 이 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특정 반응 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信号を記録媒体に記録し、若 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聴 等機器が特定の変換を必要と するよう影像、音、プログラ ムその他の情報を変換して記 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 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

9 この法律において「プログラム」とは、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いう。

10 この法律において「ドメイン名」とは、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個々の電子計算機を識別するために割り当てられる番号、記号又は文字の組合せに対応する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をいう。

11 この法律にいう「物」には、プログラムを含むものとする。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변환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 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을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도메인명"이란 인터넷에서 개개의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번 호, 기호 또는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들의 결 합을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물건"이란 프 로그램을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장-제3장)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평성2<1990>년 법률 제47호

공 포 일: 1990년 5월 19일 개 정 일: 2018년 5월 30일

원문	번역문
第二章 差止請求、損害賠償等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第三条 (差止請求権)	제3조 (금지청구권)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	①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
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	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
るおそれがある者は、その営	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
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	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	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
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
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	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
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前項	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제1항
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	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 침해
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	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침해
(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物	의 행위로 발생한 물건을 포
を含む。第五条第一項におい	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같
て同じ。)の廃棄、侵害の行為	다)의 폐기, 침해의 행위에





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 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必要な 行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 る。

第四条(損害賠償)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は、これによっとした損害を賠償する五年を担ける。ただし、第十五を規定により同条に規定により同条にその対した後にその対した後にそのを対した後にそのといるで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五条 (損害の額の推定等)

제공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 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동조에 따른 권리가 줄어든 후에 그 영업비밀 또는 한정제공데이 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 16호까지 또는 제22호의 부 정경쟁(제1항제4호부터 제9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이 항에서 "피침해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





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 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 成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 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 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 という。) に、被侵害者がその 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 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 当た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 た額を、被侵害者の当該物に 係る販売その他の行為を行う 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 度において、被侵害者が受け 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 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 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量を被 侵害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 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 は、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 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 する。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 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 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 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 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 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その営 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

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 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양 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 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 도수량"이라 한다)에 피침해 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 위수량 당 이익 금액을 곱하 여 얻은 액수를 피침해자의 해당 물건과 관련된 판매, 그 밖의 행위를 할 능력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피침해자가 입은 침해 의 액수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량을 피침해자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 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액수를 공제한다.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 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 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입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 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 익 금액은 그 영업상의 이익 을 침해당한 자가 입은 손해





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 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 該侵害に係る商品等表示の 使用
- 二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 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 る商品の形態の使用
- 三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 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 争 当該侵害に係る営業秘密 の使用

四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 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限定 提供データの使用

五 第二条第一項第十九号に

액으로 추정한다.

- ③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 또는 제22호의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다음 각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받아야할 금전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등 표시의 사용
 - 2.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 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형태의 사용
 - 3.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 9호까지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사용
 - 4.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해 당 침해와 관련된 한정제공 데이터의 사용
 - 5. 제2조제1항제19호의 부





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 係るドメイン名の使用 六 第二条第一項第二十二号 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 に係る商標の使用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 する金額を超える損害の賠償 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その営業上の利益 を侵害した者に故意又は重大 な過失がなかったときは、裁 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 めるについて、これを参酌す 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の二(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者の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等の推定)

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명의 사용

6. 제2조제1항제22호의 부 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

④ 제3항은 동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침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재판소는 침해배상액을 정할 때에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5조의2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

기술상의 비밀(생산방식,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또 는 제8호에 따른 행위(영업비 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한 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자가 해당 기술상의 비밀 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건의 생산, 그 밖 에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였 음이 명백한 행위로서 정령으





下この条において「生産等」 という。)をしたときは、その 者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規 定する行為(営業秘密を使用 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 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六条(具体的態様の明示義 務)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 の侵害による訴訟では、利れ者のでは、 の侵害によれるを選集をは、 を侵害があるを組入するのにした。 をとれるをもしたがあるを がしたがあるを がらなするのにしたがのり でない。 がはないのけ手とる がとはないのけ手とる がとはないのけ手とる がとはないのけ手とる がとされる。 のけまないのけるがいない。 のけまないのけるがいない。 ときは、このできは、このにした。 のいにしまるがいる。 のいにしまるがいる。 のいにしまるがいる。 ときは、このにいるがいときは、このにない。

第七条(書類の提出等)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

로 정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생산 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자는 각각 해당 각호에 따른 행위(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의 무)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정 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 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상태를 부인하는 때에 는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 체적 상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7조 (서류의 제출 등)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め、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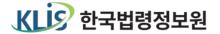
2 裁判所は、前項本文の申立 てに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 類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 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 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 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は、書類の所持者にその 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 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 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 いて、第一項本文の申立てに 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類に 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 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 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 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その意 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 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当 事者(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 ては、その代表者)又は当事 者の代理人(訴訟代理人及び

위하여 또는 해당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재판소는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동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 소지자에게 제시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동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2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以下同じ。)、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第二項の場合に おいて、同項後段の書類を開 示して専門的な知見に基づく 説明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 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同 意を得て、民事訴訟法(平成 八年法律第百九号)第一編第 五章第二節第一款に規定する 専門委員に対し、当該書類を 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各項の規定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八条(損害計算のための鑑定) 定)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 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 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裁判 所が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 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事 項について鑑定を命じたとき 그 밖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를 개시 할 수 있다.

④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동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전문적인 식견에 따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민사소송법」(평성 8<1996>년 법률 제109호) 제1편제5장제2절제1관에 따 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 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하여 입 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의 목적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 다.

제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침해의 행위로 인한 손 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명령한





は、当事者は、鑑定人に対 し、当該鑑定をするため必要 な事項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 ばならない。

第十条(秘密保持命令)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해당 감정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야 한다.

제9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 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 한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 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 운 때에는 재판소는 구두변론 의 전취지(全趣旨) 및 증거조 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 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명령)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수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항에 따른 명령을 받





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がることがでることがでいいます。ただし、その申立代とするでは当事者等、訴訟と関連を表しては補佐人が第一号は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方法に又は開示以外の方法に又は開示以外の方法に又は保護を取得し、この限りでない。

- 一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 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 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的 調べるでは取り調べいいるでは取り調べられるでは取り調べいでは いるでは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 を重類又は第十三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 の内容により開示されまり である営業秘密がまれること。
- 二 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 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 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 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 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 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 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

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증거조사나공개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조사되거나 조사되어야 하는 증거(제7조제3항에 따라공개된 서류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공개된 서면을포함한다) 내용에 당사자가보유한 영업비밀이 포함될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의 수행 목적 외의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당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해당 영업비밀에 따른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 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限 する必要があること。

- 2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 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 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一 秘密保持命令を受けるべき者
 - 二 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 に足りる事実
 - 三 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 該当する事実
- 3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 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秘密 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 なければならない。
- 4 秘密保持命令は、秘密保持 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決定 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 力を生ずる。
- 5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 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 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一条(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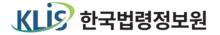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した 者又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 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영업비밀을 특정 하기에 충부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결정 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者は、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 所(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 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秘密 保持命令を発した裁判所)に 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 要件を欠くことを理由として、 で至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 で、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 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そ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5 裁判所は、秘密保持命令を 取り消す裁判をした場合にお い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 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 以外に当該秘密保持命令が終 せられた訴訟において当該営 業秘密に係る秘密保持命令を 受けている者があるときは、 その者に対し、 直ちに、秘密 保持命令を 取り消す裁判をし

는 소송기록이 존재하는 재판소(소송기록이 존재하는 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재판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더이상 충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신청을 한 자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⑤ 재판소는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소송에 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 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 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 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二条 (訴訟記録の閲覧等の 請求の通知等)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 訟(全ての秘密保持命令が取 り消された訴訟を除く。)に係 る訴訟記録につき、民事訴訟 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決定が 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事者 から同項に規定する秘密記載 部分の閲覧等の請求があり、 かつ、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 た者が当該訴訟において秘密 保持命令を受けていない者で 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 は、同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 者(その請求をした者を除 く。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 対し、その請求後直ちに、そ の請求があった旨を通知しな 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 所書記官は、同項の請求があっ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 日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 を行った者に対する秘密保持 命令の申立てがその日までに 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 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 야 하다.

제12조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 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 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 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92조제1항의 결 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동항에 따른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하고, 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가 해당 소 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 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날까지 있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 청





する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 続を行った者に同項の秘密記 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てはな 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 請求をした者に同項の秘密記 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ること 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九十二 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 者の全ての同意があるとき は、適用しない。

第十三条(当事者尋問等の公開 停止)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 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 事者等が、その侵害の有無に ついての判断の基礎となる事 項であって当事者の保有する 営業秘密に該当するものにつ いて、当事者本人若しくは法 定代理人又は証人として尋問 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裁 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 より、その当事者等が公開の 法廷で当該事項について陳述 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 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 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が 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当該事 項について十分な陳述をする

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동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 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 의 신청을 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 개정지)

①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 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 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보유 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서 심문 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당사자 등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 항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해 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 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 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 히 진술할 수 없으며, 해당





ことができず、かつ、当該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該事項を判断の基礎とすべき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の有無につができなができないできないできないできないで行うことがで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

-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等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にその陳述すべき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面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 4 裁判所は、前項後段の書面 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 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 は、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 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面を 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 5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

진술을 생략함으로써 다른 증 거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판단 의 기초가 되어야 할 부정경 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의 유무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진 행할 수 있다.

-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 사자 등에게 그 진술하여야 하는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나 그 제시 된 서면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 ④ 재판소는 제3항 후단의 서면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면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ないで行うときは、公衆を退 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 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 らない。当該事項の尋問が終 了したときは、再び公衆を入 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四条 (信用回復の措置)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した者に対しては、裁判所は、その営業上の信用を害なれた者の請求により、損害の賠償に代え、又は損害の償ともに、その者の営業上の信用を回復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 (消滅時効)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 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 ち、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 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 請求する権利は、次に掲げる 場合には、時効によって消滅 する。

一 その行為を行う者がその 行為を継続する場合におい て、その行為により営業上 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 아니하고 진행할 때에는 방청 객을 퇴정시키기 전에 그 취 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 료된 때에는 다시 방청객을 입정시켜야 한다.

제14조 (신용회복조치)

재판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게는 그 영업상의 신용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과 아울러 그 자의 영업상 신 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소멸시효)

①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제3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로소멸한다.

1. 그 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





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営業 秘密保有者がその事実及び その行為を行う者を知った 時から三年間行わないと き。

- 二 その行為の開始の時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
- 2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対する侵害の停止又は予問を請求する権利について、海の場合において、前項第一号中「営業秘密保有者」とあるのは、「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章 国際約束に基づく禁止行 為

第十六条(外国の国旗等の商業 上の使用禁止)

何人も、外国の国旗若しくは 国の紋章その他の記章であっ 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 (以下「外国国旗等」とい 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 の(以下「外国国旗等類似記 는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사 실 및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안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한 때

2. 그 행위가 개시된 때부 터 20년이 경과한 때 ② 제1항은 제2조제1항제11 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 쟁 중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 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 1호 중 "영업비밀보유자"는 "한정제공데이터보유자"로 한 다.

제3장 국제약속에 따른 금지행 위

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 상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 국기나 국 가의 문장(紋章), 그 밖의 기 장(記章)으로서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 국기 등"이라 한다)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





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 用し、又は外国国旗等類似記 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 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 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 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 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 し、若しくは外国国旗等類似 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 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 だし、その外国国旗等の使用 の許可(許可に類する行政処 分を含む。以下同じ。)を行う 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 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 でない。

국기 등 유사기장"이라 한다)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 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 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 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국기 등의 사용 허가(허가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것 외에 누구든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 국가의 문장(이하"외국 문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외국 문장을 사용한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문장으로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다만, 그외국문장의 사용 허가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3 何人も、外国の政府若しく は地方公共団体の監督用若し くは証明用の印章若しくは記 号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 めるもの(以下「外国政府等」 記号」という。)と同一若しく 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政 府等類似記号」という。)をそ の外国政府等記号が用いられ てい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 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 は役務の商標として使用し、 又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 該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 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 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 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 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 若しく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 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 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 だし、その外国政府等記号の 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 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 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七条(国際機関の標章の商業上の使用禁止)

何人も、その国際機関(政府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외국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증명 용 인장이나 기호로서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정부 등 기호"라 한다)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라 한다)을 그 외국정부 등 기호 가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나 서비스의 상표로서 사용하 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 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 하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 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그 외국정부 등 기 호의 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 업상 사용 금지)

누구나 그 국제기구(정부간





間の国際機関及びこれに準ず る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 定める国際機関をいう。以下 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関係 が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方 法で、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 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 め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 のもの(以下「国際機関類似 標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 使用し、又は国際機関類似標 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 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 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 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 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 し、若しくは国際機関類似標 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 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 し、この国際機関の許可を受 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 V20

第十八条(外国公務員等に対する不正の利益の供与等の禁止) 何人も、外国公務員等に対し、国際的な商取引に関して営業上の不正の利益を得るために、そ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こと、又は

국제기구 및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구을 표 시하는 표장으로서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이하 "국제기 구 유사표장"이라 한다)을 상 표로서 사용하거나 국제기구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 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 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제공하거나 국제기구 유사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 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이 국제기관의 허가 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8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 등 금지)

① 누구나 외국공무원 등에게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하여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는





その地位を利用して他の外国 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 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 ようにあっせんをさせること を目的として、金銭その他の 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 み若しくは約束をしてはなら ない。

- 2 前項において「外国公務員等」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
 - 一 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 団体の公務に従事する者 二 公共の利益に関する特定 の事務を行うために外国の 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 た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
 - 三一又は二以上の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により、発行済株式のうち議決権のある株式の総数若しるの金額を超れる。当該株式の総額の金額を超える当該株式の総額の金額を超える当該株式のの金額を超える。 数若しくはというの数には、監事及び活算人が経済で事業のといるものといるものといるものといるといる。 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の。

것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 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제안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외국공무원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 1.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 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특 정 사무를 하기 위하여 외 국의 특별 법령에 따라 설 립된 것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3.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 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 이 있는 주식의 총수나 출 자 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수나 출자 금액을 직접 소유하거 나 임원(주식회사 및 법인 의 이사, 주식회사 및 법인 의 감사, 청산인 및 이들 외 에 사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의 과반수가 임명되거나 지명되는 사업





は指名されている事業者であって、その事業の遂行に当たり、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から特に権益を付与されている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四 国際機関(政府又は政府 間の国際機関によって構成 される国際機関をいう。次 号において同じ。)の公務に 従事する者

五 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 公共団体又は国際機関の権 限に属する事務であって、 これらの機関から委任され たものに従事する者 자로서 그 사업 수행 시에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 체가 특별히 권익을 부여한 사업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제기구(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을 말한다. 제5호에서 같다)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외국정부나 지방공공단 체 또는 국제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들 기관 이 위임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 4 장-제 9 장)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평성5<1993>년 법률 제47호

공 포 일: 1993년 5월 19일
개 정 일: 2018년 5월 30일

원문	번역문
第四章 雑則	제4장 잡칙

第十九条 (適用除外等)

第三条から第十五条まで、第二十一条(第二項第七号に係る部分を除く。)及び第二十二条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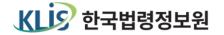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商品若しくは営業の普通名称(ぶどうを原料又は材料とする物の原産地の名称であって、普通名称となったものを除く。)若しくは同一若

제19조 (적용제외 등)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 21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2조 는 다음 각 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0호 및 제22호의 부정경 쟁: 상품이나 영업의 보통명 칭(포도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물건의 원산지 명 칭으로서 보통명칭이 된 것을 제외한다)이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에





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 営業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 る商品等表示(以下「普通 名称等」と総称する。)を普 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 し、若しくは表示をし、又 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 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 くは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 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 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 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 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 する行為(同項第二十号及 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 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普 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 る方法で表示をし、又は使 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 を含む。)

二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 二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 る不正競争 自己の氏名を不 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 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 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 をいう。以下同じ。)でなく 使用し、又は自己の氏名を 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 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 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

대하여 관용되는 상품 등 표시(이하 "보통명칭 등"이 라 한다)를 일반적으로 이 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 나 표시, 또는 보통명칭 등 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 법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 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제2 조제1항제20호 및 제22호 의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보 통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이 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 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 자 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없이 사용 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부정 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 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 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





に展示し、輸出し、輸入 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 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 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 にあっては、自己の氏名を 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て 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 む。)

三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 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 表示が需要者の間に広く認 識される前からその商品等 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 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 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 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 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 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 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 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 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 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 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 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四 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 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 表示が著名になる前からそ 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 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 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 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

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호의부정경쟁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정 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 가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 식되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4.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 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 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

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





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 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 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 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 し、引き渡し、譲渡若し、 引き渡し、譲渡若し、 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く は引渡し、輸入し、若しくは 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 する行為

五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 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 に掲げる行為

イ 日本国内において最初に 販売された日から起算して 三年を経過した商品につい て、その商品の形態を模倣 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の 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 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 は輸入する行為

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 나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 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 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 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 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제공하는 행위

5.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 는 행위

나.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받은 자(상품을 양도받은 때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그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行為

六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 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 争 取引によって営業秘密を 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 時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 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であ ること又はその営業秘密に 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 為若しくは営業秘密不正開 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 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 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 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 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 おい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 し、又は開示する行為 七第二条第一項第十号に掲 げる不正競争 第十五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 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 の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 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 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 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 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 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八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 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 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 る行為

6.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 9호까지의 부정경쟁: 거래 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영업비밀을 취득한 때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 비밀 부정공개행위인 사실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 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영 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하는 행위

7. 제2조제1항제10호의 부 정경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항에 따른 권리가 소 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 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 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 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8.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ロ その相当量蓄積されている情報が無償で公衆に利用可能となっている情報と同一の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九 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 技術的制限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に用いられる同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規定する装置、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装置、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である若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記録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

가. 거래에 따라 한정제공데 이터를 취득한 자(한정제 공데이터를 취득한 때에 그 데이터에 대하여 한정 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 인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행위나 한 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 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자로 한정한다)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 의 범위 내에서 그 한정제 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나. 상당량 축적된 정보가 무상으로 공중이 이용 가 능한 정보와 동일한 한정 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 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 제2조제1항제17호 및 제 18호의 부정경쟁: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되는 동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장치,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 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프로그





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 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 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プ 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 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 供する行為又は技術的制限 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 に行われるこれらの号に規 定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2 前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 げる行為によって営業上の利 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 るおそれがある者は、次の各 号に掲げる行為の区分に応じ 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対 し、自己の商品又は営業との 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 付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 ができる。

一 前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 自己の氏名を使用する者 (自己の氏名を使用した商 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引きし、引きし、 議渡若しくは引渡し 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 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 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二 前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 他人の商品等表示を使用 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 する者及びその商品等表示 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통 신회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기술적 제한수단 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 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방지하 기 위한 적당한 표시를 청구 할 수 있다.

- 1. 제1항제2호의 행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제1항제3호의 행위: 타 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 시를 사용하는 자 및 그 상





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 (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第十九条の二(政令等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ついて必要な事項で、滞納処分に関するものは、政令で定める。

2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第三者の参加及び裁判に関する手続、第八章に規定する没収保全及び追徴保全に関する手続並びに第九章に規定する国際共助手続について必要な事項(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除く。)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二十条 (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 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 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 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9조의2 (정령 등에의 위임)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몰수 보전과 체납 처분 절차 의 조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체납 처분에 관한 것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2조에 따른 제3자의 참가 및 재판에 관한 절차, 제8장에 따른 몰수 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 제9장에 따른 국제공조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다)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정령 또는 경제 산업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 는 경우에는 그 정령 또는 경





は、その政令又は経済産業省 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 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 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 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 る。 제산업성령으로서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第五章 罰則

第二十一条 (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기망,폭행,또는 협박하는 행위를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절취,시설침입,부정접속행위(「부정접속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평성11<1999>년법률제128호)제2조제4항에따른부정접속행위를말한다},그밖의영업비밀보유자의관리를해치는행위를말한다.





害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 おいて同じ。)により、営業 秘密を取得した者

二 詐欺等行為又は管理侵害 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 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 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 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 で、使用し、又は開示した 者

三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 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 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 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 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 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 任務に背き、次のいずれか に掲げる方法でその営業秘 密を領得した者

イ 営業秘密記録媒体等(営 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記 録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 録媒体をいう。以下この号 において同じ。)又は営業 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を横 領すること。

ロ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若しくは記録について、 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について、その複製を 제2호에서 같다]로 영업비 밀을 취득한 자

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 침해행위로 취득한 영업비 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3.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알려준 자로서 부정 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 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 된 임무에 반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영 업비밀을 영득(領得)한 자

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 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 된 문서, 도화 또는 기록매 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 구체화된 물건의 횡령

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나 기록 또는 영업비 밀이 구체화된 물건에 대 한 그 복제 작성





作成すること。

ハ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又は記録であって、消去すべきものを消去せず、かつ、当該記載又は記録を消去したように仮装すること

五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 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 (理事、取締役、執行役、 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 若しくは監査役又はこれら に準ずる者をいう。次号に おいて同じ。)又は従業者で 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 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 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서 소 거하여야 할 것을 소거하 지 아니하고 해당 기재 또 는 기록을 소거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4.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알려준 자로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하여 제3호의가¹ 부터 다까지의 방법으로 영 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 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 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 무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 개한 자

5.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알려준 그 임원(법 인 및 주식회사의 이사, 집 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 원, 법인 및 주식회사의 감 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6호에서 같다) 또는 근로자로서 부정한 이 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¹ 일본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이 없다. 따라서, '~호의가, 나, 다/가, 나, 다'와 같이 번역하기로 한다.





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 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 係る任務に背き、その営業 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 た者(前号に掲げる者を除 く。)

六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 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又 は従業者であった者であっ 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 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 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 その在職中に、その営業秘 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 てその営業秘密の開示の申 込みをし、又はその営業秘 密の使用若しくは開示につ いて請託を受けて、その営 業秘密をその職を退いた後 に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 (第四号に掲げる者を除 (,)

七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 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 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 第二号若しくは前三号の罪 又は第三項第二号の罪(第 二号及び前三号の罪に当た 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 に当たる開示によって営業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6.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보여준 그 임원 또 는 근로자로서 부정한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 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 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 비밀의 공개를 신청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 개에 대하여 청탁을 받아 그 직무를 그만둔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제2호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해 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





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 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 た者

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공개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 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 하거나 공개한 자 8.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제2호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죄에 해 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 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공개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 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한 자 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나 제4호부터 제8호까 지 또는 제3항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의 비 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2 조제1항제2호에서 "위법사 용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





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 した者(当該物が違法使用 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 高の情を知らないで き渡し、当該物を譲渡くは引 とのために展示し、輸出 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 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を 除く。)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 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 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一 不正の目的をもって第二 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十 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 た者
- 二 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 に係る信用若しくは名声を 利用して不正の利益を得る 目的で、又は当該信用若し くは名声を害する目的で第二 会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 不正競争を行った者 三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 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四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 で、又は営業上技術的制限

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해 당 물건이 위법사용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양수, 해당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를 제외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1. 부정한 목적으로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0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 2.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신용이나 명성을 해칠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경쟁을 한자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3호의부정경쟁을 한자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手段を用いている者に損害 を加える目的で、第二条第 一項第十七号又は第十八号 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 者

七 第十六条、第十七条又は 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 反した者

- 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 しくは三千万円以下の罰金に 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一 日本国外において使用する目的で、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の罪を犯した者 二 相手方に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当た

제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17호 또는 제 18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 5. 상품이나 서비스,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허위 표시를 한 자(제1호에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6.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
- 7. 제16조, 제17조 또는 제 18조제1항에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 서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





る使用をする目的があることの情を知って、これらの 罪に当たる開示をした者

三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 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 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 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 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 当たる使用をした者

4 第一項(第三号を除く。) 並びに前項第一号(第一項第 三号に係る部分を除く。)、第 二号及び第三号の罪の未遂 は、罰する。

5 第二項第六号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第一項各号 (第九号を除く。)、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 第二号又は第四項 (第一項第 九号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 は、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 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 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 てこれらの罪を犯した者にも 適用する。

7 第二項第六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8 第二項第七号(第十八条第

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들 죄에 해당하는 공개를 한 자

3. 일본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 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 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4 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④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항제1호(제1항제3호와 관 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2 호 및 제3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⑤ 제2항제6호의 죄는 고소 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제1항 각 호(제9호를 제외한다), 제3항제1호나 제2호또는 제4항(제1항제9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이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⑦ 제2항제6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⑧ 제2항제7호(제18조제1항





- 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 の罪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条の例に従う。
- 9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を妨げない。
- 10 次に掲げる財産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の犯罪行為により生じ、若しくは当該犯罪行為により得た財産又は当該犯罪行為により得た財産として得た財産
 - 二 前号に掲げる財産の果実 として得た財産、同号に掲 げる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 財産、これらの財産の対価 として得た財産その他同号 に掲げる財産の保有又は処 分に基づき得た財産
- 11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 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 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 六号。以下「組織的犯罪処罰 法」という。)第十四条及び第 十五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 による没収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組織 的犯罪処罰法第十四条中「前

- 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 다)의 죄는 「형법」(명치 40<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
-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법」, 그 밖의 벌칙의 적 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 1.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발생하거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로 인하여 얻은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 2. 제1호의 재산의 과실로 서 얻은 재산, 동호의 재산 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 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동호의 재산 의 보유 또는 처분에 따라 얻은 재산
- 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1<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및 제15조는 제10항에 따른 몰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에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4조 중 "제13조제1항 각





条第一項各号又は第四項各 号」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 止法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12 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当該財産の性質、その使用の状況、当該財産に関する犯人以外の者の権利の有無その他の事情から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価額を犯人から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二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 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 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 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起 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 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 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 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 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 る。

一 前条第三項第一号(同条 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 限る。)、第二号(同条第一 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 号に係る部分に限る。) 若し 호 또는 제4항 각 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0항 각 호"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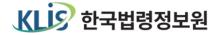
② 제10항 각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 또는 해당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해당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의 유무, 그 밖의 사정으 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할 수 있다.

제22조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 각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 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 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二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 号、第七号、第八号若しく は第九号(同項第四号から 第六号まで又は同条第三項 第三号(同条第一項第四号 から第六号までに係る部分 に限る。)の罪に係る違法使 用行為(以下この号及び第 三項において「特定違法使 用行為」という。)をした者 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又 は第四項(同条第一項第一 号、第二号、第七号、第八 号及び第九号(特定違法使 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 場合を除く。) に係る部分に 限る。) 五億円以下の罰金

한정한다)나 제3호(동조 제 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 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 다) 또는 제4항[동조 제3항 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1항제2호, 제 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 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 (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 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부 분으로 한정한다]: 10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21조제1항제1호, 제2 호, 제7호, 제8호나 제9호 [동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동조 제3항제3호(동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 다)의 죄와 관련된 위법사 용행위(이하 이 호 및 제3 항에서 "특정위법사용행위" 라 한다)를 한 자가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항[동조 제1항제1호, 제 2호, 제7호, 제8호 및 제9 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5억엔 이하의 벌





刑

- 三 前条第二項 三億円以下 の罰金刑
-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 行為者に対してした前条第二 項第六号の罪に係る同条第五 項の告訴は、その法人又は人 に対しても効力を生じ、その 法人又は人に対してした告訴 は、当該行為者に対しても効 力を生ずるものとす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 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 号、第八号若しくは第九号 (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 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第 二項、第三項第一号(同条第 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 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 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 る部分に限る。) 若しくは第三 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 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 る。) 又は第四項(同条第一項 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 八号及び第九号(特定違法使 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 合を除く。) 並びに同条第三項 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 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

금형

- 3. 제21조제2항: 3억엔 이 하의 벌금형
-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행위 자에게 한 제21조제6호의 죄 와 관련된 동조 제5항의 고소 는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인 또 는 사람에게 한 고소는 해당 행위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1 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 호나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 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항, 제3항제1 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 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 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나 제3호(동조 제1 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4항[동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 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 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동조 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 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 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 る。)及び第三号(同条第一項 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 係る部分に限る。)に係る部分 に限る。)の違反行為につき法 人又は人に罰金刑を科する場 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こ れらの規定の罪についての時 効の期間による。

第六章 刑事訴訟手続の特例

第二十三条(営業秘密の秘匿決定等)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 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の 罪又は前条第一項(第三号を 除く。) の罪に係る事件を取り 扱う場合において、当該事件 の被害者若しくは当該被害者 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 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 ら、当該事件に係る営業秘密 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 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 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 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 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 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 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 분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사람 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의 시효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대한 시효 기간에 따른 다.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제23조 (영업비밀의 비공개결 정 등)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 3항이나 제4항의 죄 또는 제 22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다)의 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 루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 해자나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 리인 또는 이들의 위탁을 받 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 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하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 에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





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 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 できる。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所は、第一項に規定す 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 て、検察官又は被告人若しく は弁護人から、被告人その他 の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を構 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 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 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 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 は、相手方の意見を聴き、当 該事項が犯罪の証明又は被告 人の防御のために不可欠であ り、かつ、当該事項が公開の 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 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 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 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 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 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 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 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 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사전에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사 건을 다루는 경우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 고인, 그 밖의 사람이 보유하 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 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 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 대방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 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 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수적하 며, 해당 사항이 공개 법정에 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 밀에 기초한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 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 정에서 밝히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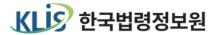




5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 事件について、営業秘密構成 情報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 明らかにしないことが相当で ない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 又は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 年法律第百三十一号) 第三百 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 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第 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 なくなったときは、決定で、 秘匿決定の全部又は一部及び 当該秘匿決定に係る前項の決 定(以下「呼称等の決定」と 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 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제3 항의 결정(이하 "비공개 결 정"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 철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영 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비 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 법정 에서 밝히지 아니하게 된 영 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 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관련된 명칭,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그 밖 의 표현을 정할 수 있다. ⑤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공개 법 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게 된 때 또는 「형사소송 법」(소화23<1948>년 법률 제131호) 제312조에 따라 벌 칙 조항이 철회되거나 변경되 어 제1항에 따른 사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 정으로 비공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비공개 결 정과 관련된 제4항의 결정(이 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第二十四条(起訴状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一条第一項の起訴状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起訴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 (尋問等の制限)

2 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五条 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비공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91조제1 항의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 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심문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면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소송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②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





た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 護人がこれに従わなかった場 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六条(公判期日外の証人 尋問等)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場 合において、証人、鑑定人、 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を尋問 するとき、又は被告人が任意 に供述をするときは、検察官 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 を聴き、証人、鑑定人、通訳 人若しくは翻訳人の尋問若し くは供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 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被 告人の供述が営業秘密構成情 報特定事項にわたり、かつ、 これ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 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 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 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 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 これを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 ない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 日外において当該尋問又は刑 事訴訟法第三百十一条第二項 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被告人 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するこ とができる。

2 刑事訴訟法第百五十七条第

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 다.

제26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 심문 등)

①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 인이나 번역인을 심문하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 술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나 번역인의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 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 사항에 걸치며, 공개 법정에 서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 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 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





一項及び第二項、第百五十八 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百五 十九条第一項、第二百七十三 条第二項、第二百七十四条並 びに第三百三条の規定は、前 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 を求め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 第百五十七条第一項、第百五 十八条第三項及び第百五十九 条第一項中「被告人又は弁護 人」とあるのは「弁護人、共 同被告人又はその弁護人」 と、同法第百五十八条第二項 中「被告人及び弁護人」とあ るのは「弁護人、共同被告人 及びその弁護人」と、同法第 二百七十三条第二項中「公判 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 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 る手続の期日」と、同法第二 百七十四条中「公判期日」と 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 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 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 日時及び場所」と、同法第三 百三条中「証人その他の者の 尋問、検証、押収及び捜索の 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押 収した物」とあるのは「不正

제1항 및 제2항, 제158조제2 항 및 제3항, 제159조제1항, 제273조제2항, 제274조, 제 303조는 제1항에 따른 피고 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57조제1항, 제158조 제3항 및 제159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 인, 공동 피고인 또는 그 변 호인", 동법 제158조제2항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 인, 공동 피고인 및 그 변호 인", 동법 제273조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 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 의 기일", 동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 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 의 일시 및 장소", 동법 제 303조 중 "증인, 그 밖의 사 람의 심문, 검증, 압수 및 수 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 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 거서류"로 하다.





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 求める手続の結果を記載した 書面」と、「証拠書類又は証拠 物」とあるのは「証拠書類」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七条 (尋問等に係る事項 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命 令)

第二十八条(証拠書類の朗読方 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三百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証拠書類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

제27조 (심문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재판소는 호칭 등의 결정을 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문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요 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관계인의 모든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 술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제28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 의 특례)

비공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05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서 류의 낭독은 영업비밀 구성정 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





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

第二十九条 (公判前整理手続等 における決定)

次に掲げる事項は、公判前整 理手続及び期日間整理手続に お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

- 一 秘匿決定若しくは呼称等 の決定又はこれらの決定を 取り消す決定をすること。 二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尋問又は被告人の供
- により尋問又は被告人の供 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 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 こと。

第三十条(証拠開示の際の営業 秘密の秘匿要請)

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 (공판 전 정리절차 등 의 결정)

다음의 사항은 공판 전 정리 절차 및 기일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

- 1. 비공개 결정이나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들 결정 의 취소 결정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 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결정

제30조 (증거공개 시 영업비밀 의 비공개 요청)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제 23조제1항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9 조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할 때에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





2 前項の規定は、検察官又は 弁護人が刑事訴訟法第二編第 三章第二節第一款第二目(同 法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第二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る証拠の開示 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 る。

第三十一条(最高裁判所規則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二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이나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 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중 기소 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 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은 검찰관 또는 변호 인이 「형사소송법」 제2편제 3장제2절제1관제2목(동법 제 316조의28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의 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1조 (「최고재판소 규칙」에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 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 한다.





第七章 没収に関する手続等の特 例

第三十二条 (第三者の財産の没 収手続等)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である債権等(不動産及び動産以外の財産をいう。 第三十四条において同じ。)が被告人以外の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三者」という。)に帰属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ができない。

2 第二十一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八条 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 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 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 する財産を没収する場合にお いて、第二十一条第十一項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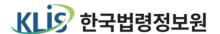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32조 (제3자의 재산의 몰수 절차 등)

① 제21조제10항 각 호의 재산인 채권 등(부동산 및 동산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4조에서 같다)이 피고인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3자"라한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참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 ② 제21조제10항에 따라 지 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 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해 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 참 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조직적범죄처벌법」 제 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 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 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21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おいて準用する組織的犯罪処 罰法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 より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 き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財産の没収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三十八号)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十三条(没収された債権等の処分等)

第三十四条(刑事補償の特例) 債権等の没収の執行に対する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5 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형사 사건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소화 38<1963>년 법률 제138호)을 준용한다.

제33조 (몰수 채권 등의 처분 등)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9 조는 제21조제10항에 따른 몰수에 대하여, 「조직적범죄 처벌법」 제20조는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 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몰 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9 조 중 "제4장제1절"은 "「부 정경쟁방지법」 제8장"으로 한다.

제34조 (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의 집행에





刑事補償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一号)による補償の内容については、同法第四条第六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八章 保全手続

第三十五条(没収保全命令)

2 裁判所は、地上権、抵当権 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 する財産について没収保全命 令を発した場合又は発しよう 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権 利が没収により消滅すると思 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 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財産を 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 대한 형사보상법」(소화 25<1950>년 법률 제1호)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전절차

제35조 (몰수 보전명령)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10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몰수 보전명령을 내려 해당 재산에 대하여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 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 보 전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그 명령을 내리려 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가 몰수에 따라 소 멸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めるとき、又は当該権利が仮 装のものであると思料するに 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 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 より、又は職権で、附帯保全 命令を別に発して、当該権利 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 る。

3 裁判官は、前二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又は智察官たる司法警察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が指定する警部以上の者に限る。)の請求により、前二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一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没収保全命令及び附帯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

第三十六条(追徴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 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に 係る被告事件に関し、同条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권리가 가장(仮装)된 것 으로 사료되기에 충분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 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 권으로 부대보전명령을 따로 내려 해당 권리의 처분을 금 지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안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인자로 한정한다)의 청구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조직 적범죄처벌법」 제4장제1절 및 제3절에 따른 몰수 보전명 령 및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의 금지의 예에 따른다.

제36조 (추징보전명령)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 3항 및 제4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





十二項の規定により追徴すべに と場合に当たると思料する場合に当な理由がある場合 において 連切して できるが できながらない できるが できるが できる がい できる に 被告 して がい できる。

2 裁判官は、前項に規定する 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 であっても、検察官の請求に より、同項に規定する処分を 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二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追徴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

12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 재판의 집행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 집행을 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피고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4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른 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의 예에 따른다.





第九章 没収及び追徴の裁判の執 行及び保全についての国際共助 手続等

第三十七条 (共助の実施)

外国の刑事事件(当該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刑事事件にる の間になる の日本と の日本と の日本と の日本と の日本と の日本に の日本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に の日本

一 共助犯罪(共助の要請に 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 る犯罪をいう。以下この項 において同じ。)に係る行為 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 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 本国の法令によればこれに ついて刑罰を科すことがで 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共助犯罪に係る事件が日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 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 차 등

제37조 (공조의 실시)

① 외국의 형사사건(해당 사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해당 행위가 제2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외국에서 몰수나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 또는 물수나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해당 요청과 관련된 공조를할수있다.

1. 공조 범죄(공조 요청에서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된 행위가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한 경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형벌을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조 범죄와 관련된 사





本国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又はその事件について 日本国の裁判所において確 定判決を経たとき。

三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 共助又は没収のための保全 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 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 者にて行われたとしる財 おいて行われたとはる財産によれば 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判 をし、できる財産に当たる ものでないとき。

四 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 共助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 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 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 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 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 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追 徴の裁判をし、又は追徴保 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五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 共助については要請に係る 財産を有し又はその財産の 上に地上権、抵当権その他 の権利を有すると思料する に足りる相当な理由のある

건이 일본국 재판소에 계속하는 때 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일본국 재판소에서 확정 재판을 거친 때 3.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또는 몰수를 위한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경우에 요청과 관련된 재판이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범죄에 대하여 몰수 재판을하거나 몰수 보전을 할수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4.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 행 공조 또는 추징을 위한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 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 범죄에 대하여 추징 재판을 하거나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닌 때 5.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

아닌 때

5. 볼수의 확정 재판의 십 행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과 관련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고 사료 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





者が、追徴の確定裁判の執 行の共助については当該裁 判を受けた者が、自己の責 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 理由により、当該裁判に係 る手続において自己の権利 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か ったと認められるとき。 六 没収又は追徴のための保 全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 国の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 のした没収若しくは追徴の ための保全の裁判に基づく 要請である場合又は没収若 しくは追徴の裁判の確定後 の要請である場合を除き、 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行わ れた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 理由がないとき、又は当該 行為が日本国内で行われた とし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 五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 に規定する理由がないと認 められるとき。

2 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係る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をするに際し、日本国の法令により当該財産を没収するとすれば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場合に当たるとき

가 있는 자가 추징 확정 재 판의 집행 공조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을 받는 자가 자 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는 이유로 해당 재판과 관 련된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 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인정 되는 때

6. 몰수 또는 추징의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국 재 판소나 재판관이 한 몰수나 추징을 위한 보전 재판에 따른 요청인 경우 또는 요 청이나 추징 재판의 확정 후 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어났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 또는 해당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 산과 관련된 몰수 확정 재판 의 집행 공조를 하는 때에는 일본국 법령에 따라 해당 재 산을 몰수하면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





は、これを存続させるものと する。

第三十八条(追徴とみなす没収)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 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 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ける であって当該裁判を受する を設力の執行に係る共助な であっては、当該確定 は、この法律による者が は、この法律による者が は、このはは、その者が を追徴する確 裁判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第二十一条 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 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 価額に相当する財産を没収す るための保全に係る共助の要 請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九条(要請国への共助の 実施に係る財産等の譲与)

第三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 没収又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 行の共助の要請をした外国か ら、当該共助の実施に係る財 産又はその価額に相当する金 하는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 다.

제38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① 제21조제10항 각 호의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해당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것을 몰수하는 확정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공조 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 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의 실시에 대하여는 그 자로부터 해당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 재판으로 본다.

② 제1항은 제21조제10항 각호의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보전과 관련된 공조 요청에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 (요청국에의 공조 실시와 관련된 재산 등의 양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공조 요청을 한 외국에서 해당 공조의 실시와 관련된 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銭の譲与の要請があったとき 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譲与 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条(組織的犯罪処罰法に よる共助等の例)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 第三十七条の規定による共助 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譲与に 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 第六章の規定による共助及び 譲与の例による。

附則抄

금전의 양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 (「조직적범죄처벌법」 에 따른 공조 등의 예)

제37조부터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7조에 따른 공조 및 제39조에 따른 양여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6장에 따른 공조 및 양여의 예에 따른다.

부칙